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0.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0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0.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제도의 통일성 확보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변경 및 상담전문요원 배치 규정 신설
- 보육시설 위탁 제한 규정 정비
- 방과 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기준 삭제
- 보조금 반환 사유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등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안 제2조제6호의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정의는 방과 후 어린이집의 신규확충이 중단되어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한 본 조례안 제29조 및 제30조를 삭제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삭제 하였으며,
 - 안 제6조제2항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은 상위법에 명시 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6조제4항에 간사를 보육행정담당주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임명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본 조항은 삭제하고 본 조례 안 제9조제3항에 수정 보완 하였으며,
 - 안 제7조의 위원회 심의사항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9조제3항은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한 간사 임명사항을 수정하여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 안 제12조제3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을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 안 제13조제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

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17조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 안 제19조제2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심사기준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과 일치시켰고, 안 제19조제4항은 안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 안 제21조는 「영유아보육법」 에서 위임된 근거 없이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 하였으며,
- 안 제24조 및 제28조의 어린이집 위탁 취소 사유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 안 제5장 제29조 및 제30조의 방과 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기존에 설치된 시설만 지원되고, 신규 확충이 중단됨에 따라 5장 각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설치·운영 되고 있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2조 보조금 반환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함.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규제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절차를 예방함으로써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75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영등포구의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변경 및 상담전문요원 배치 규정 신설
- 다. 보육시설 위탁 제한 규정 정비
- 라. 방과 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기준 삭제
- 마. 보조금 반환 사유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7.8.24. ~ 9.13.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중 “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육정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에 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중 “과반수 의”를 “과반수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면한다”를 각각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육전문요원”을 “보육전문요원”이라 하고, “임면”을 “임명”으로 한다. 같은 항 단서 중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를 “보육전문요원은”으로, “임면”을 “임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법 제12조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의2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전단 중 “일곤되고”를 “일관되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수탁자에게 시행규칙 제2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임면한다”를 각각 “임명한다”로 한다.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u>사람</u>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p> <p>6. “<u>방과 후 보육</u>”이란 <u>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u>사람</u>-----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3조(책임) ①、② (생략)</p> <p>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u>구</u>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이하 “<u>구</u>”라 한다) --.</p>
<p>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p> <p>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u>보육정책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p> <p>-----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u>(이하 “<u>위원회</u>”라 한다)----- ----- -----.</p>

② (생략)

제5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구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 -----

----- 구에 위원회 -----

----- .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0분의 10 이하

③ (생략)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행정담당주사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략)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0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과반수의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5년 -----.

제13조(기능) ① -----
영 제13조제1항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9.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 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 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제14조(구성) ① -----

 ----- 정보를 제공하
 ----- 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
 -----.

② -----

 ----- 임명한다. -----

 -----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 임명한다. -----
 ----- 보육전문요원

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생략)

⑤ (생략)

제16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

제17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1개동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은 -----

--- 임명 -----

-----.

④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6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 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

----- 법 제

12조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

-----.

② (생략)

제19조(위탁운영) ① (생략)

②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 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의항목 배점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21조(2개 이상의 위탁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2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의2를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23조(위탁기간) -----
----- 일관되고 -----

-----.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22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시설장, 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 및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을받았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수탁자에게

시행규칙 제25조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직원
원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
한다.

② (생략)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⑥ (생략)

제5장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저소
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

----- 임명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어린이집 기준) 방과 후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제32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삭 제>

제32조(보조금의 반환) -----
----- 법 제40조-

-----.

<삭 제>

<삭 제>

<삭 제>